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10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문예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현, 최종길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790,41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1. 12. 23.까지는연 6%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1,833,921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를 C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에 의하면, 별지 도면 표시 기설 관로 중 본래 보도였던 D측 175m 중 약 50m 부분(이하 ‘이 사건 D측 변경부분’이라고 한다)과 E측 380m 중 약 30m 부분(이하 ‘이 사건 E측 변경부분’이라고 한다)이 차도로 변경되며, 위 변경되는 부분 지하에는 피고의 통신설비(이하 ‘이 사건 통신설비’라고 한다)가 지하 0.6m 이하의 깊이에 매설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통신설비 이설공사 관련 이행협약의 체결

1)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제3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제2017-4호 고시, 이하 ‘이 사건 설비기준 고시’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차도는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 1.0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통신설비는 지하 0.6m 이하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사건 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졌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위 제80조 제3항에 따라 통신설비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그 이전 등 조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 방법과 그 비용부담을 두고 2015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지에 접하는 E 및 D 전 구간 578m에 대한 관로 12공, 동케이블 14조, 광케이블 38조 등의 통신설비 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2017. 4. 14.경 위 578m에 대한 통신설비 등 이전 공사비로 총 1,951,270,000원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주식회사 F가 작성한 ‘지하매설 통신관로 시험 굴착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통신설비 이전 조치 방법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되는 부분의 통신관로(이 사건 D측 변경부분과 E측 변경부분 합계 약 80m)에 한하여 통신관로를 기존 위치에서 지하로 200mm 낮추는 낮춤공사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낮춤공법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내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들어 거절하였고,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E 및 D 전 구간 578m에 대한 통신설비의 이전공사비를 2017. 4. 14.경에 통보한 금액보다 352,436,079원 감축한 1,598,833,92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재산정하여 통보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통신설비 지장이전공사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위 이행협약의 내용을 2017. 12. 29. 일부 변경하였다(2017. 12. 29.자로 최종 변경된 이행협약을 이하 ‘이 사건 이행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이행협약의 내용에 따라 D와 E 총 578m 구간에 매설된 피고 통신설비(관로 12공, 동케이블 14조, 광케이블 38조)에 대한 지장물 이전공사(이하 ‘이 사건 이전공사’라고 한다)가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이행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통신설비 지장이전공사 이행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재건축을 위한 통신설비 지장이전공사(이하 ‘본 공사’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구간 및 공사내용 등)

본 공사의 공사구간 및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구간: 안산시 단원구 A 아파트 재건축 공사 구간 내 관로 12공, 동케이블 14조, 광케이블 38조 총 약 578m 및 동 공사구간 내 피고의 통신설비 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
2. 공사내용: 피고의 통신설비 이전에 필요한 굴착공사, 관로포설 공사, 통신선 설비 및 이설 공사
3. 예상 공사기간: 2018. 1. 15 ~ 2018. 3. 15.(통신관로공사)
2018. 2. 10. ~ 2018. 4. 10.(케이블공사)
4. 예상 공사비용: 1,598,833,921원

제3조(공사의 시행)

- ① 본 공사는 제4조의 공사비 분담에 의하여 피고가 시행한다.
- ② 피고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원고의 납부 금액 지급 확인 후 본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사 착수 이후 세부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사비의 산정 및 정산)

- ① 본 공사의 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의 규정 및 내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다.
- ② 피고가 산정한 본 공사의 공사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 ③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공사의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납부 금액 1,598,833,921원, 납부기한 2018. 1. 5. 까지
- ④ 원고는 전항의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납부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납부한다.
- ⑤ 피고는 실제 지출된 공사비를 확정하여 본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류 일체를 조합에게 제출하며, 만일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비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는 차액의 이자에 관하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만일 피고가 제출한 정산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비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정산서류 수령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차액을 피

고에게 추가 지급한다.

라. 이 사건 이전공사의 진행

1) 이 사건 이전공사는 크게 선로공사, 관로공사, 기간망공사로 나뉘며, 피고는 이 사건 이전공사 중 선로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391,734,408원, 공사기간 2018. 1. 22. ~ 2018. 6. 11.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관로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245,487,715원, 공사기간 2018. 1. 22. ~ 2019. 3. 29.로 정하여 도급하였으며, 기간망공사 부분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12,494,775원, 공사기간 2018. 2. 6. ~ 2018. 5. 24.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이 사건 이전공사의 설계 및 감리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공사 중 선로공사와 관로공사는 각 2018. 1. 22. 착공하여 2018. 6. 11. 사용검사를 각 받았으며, 기간망공사는 2018. 2. 6. 착공하여 2018. 5. 24.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이전공사 자체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8. 4. 27.경 있었다.

3) G은 이 사건 이전공사 중 선로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391,734,408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6. 12. 발행하였고 H도 이 사건 이전공사 중 관로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245,487,715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6. 12. 발행하였으며 각 그 무렵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I은 이 사건 이전공사 중 기간망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112,494,775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6. 4. 발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이전공사의 정산관련 논의

1)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공사비용 1,598,833,921원을 선납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1,101,769,000원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선납한 공사대금 중 497,064,921원을 환급하겠다는 공문을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11/6 맨홀실사결과 관로9공이 빈공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초과 시설한 것으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하면 약 114,576,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 “정산비용을 조달청 낙찰율 87.6%를 적용하는 경우 약 137,293,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직영시험비 등 추가 부대업무비용 22,403,530원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가 환급하여야 하며, 이윤도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여 약 1,000만 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함”, “간접노무비를 일괄적으로 직접노무비의 10%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최초에 기간망공사는 약 1.9% 책정하였으니 이를 기준으로 전체 약 5% 수준에서 정산하고자 합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환급예정금액 497,064,921원 외에 추가로 307,510,456원을 환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24. 이하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며, 원고의 추가환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위 1항 관련 귀 조합에서 요청하신 원인자부담 지장이전공사 정산건에 대하여 추가 환급 요청 및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추가완급요청: 환급불가

나. 관로초과 설치분: 초과시공 사실 없음

○ 원인자 부담공사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당초 통신관로 100mm x 16공을 케이블 최적화 설계에 따라 통신관로 12공으로 변경, 축소 공사 시행

다. 조달청 낙찰률 적용: B 내부 회계규정 적용

라. 추가부대/적정이윤: 정보통신공사 회계규정 적용

마. 간접노무비: 정보통신공사 회계규정 적용

5)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정산내역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공정별 입찰에 따른 낙찰가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하여 환급해달라는 공문을 2018. 12. 26.과 2019. 7. 15.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공정별 하도급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서류를 2019. 8. 7.까지 원고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자, 2019. 8.

8. 재차 위 서류의 제출을 2019. 8. 14.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는 법무팀이 내부적으로 추가서류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할 뿐 달리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9. 17.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2019. 9. 27.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협약서 제10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6) 피고는 202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152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금을 535,925,893원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했던 피고의 이 사건 통신설비 등 이전공사는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된 이 사건 D측 변경부분과 E측 변경부분 총 80m 구간의 매설깊이를 200mm 낮추는 것으로 충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넘어서 피고의 편의 및 시설의 증설 교체 등을 위한 과잉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D측 변경부분과 E측 변경부분 총 80m 구간의 통신설비를 위와 같이 낮추는데 필요한 공사비용인 187,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납한 공사비용 1,598,833,921원에서 위 187,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411,833,921원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8. 4. 27.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5. 27.의 다음날인 2018. 5.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이전공사가 과잉공사가 아니더라도, ① 이 사건 이전공사로 인하여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이전공사는 실질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비 이전 요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며, ②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4조 제3항은 이전대상 설비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이설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에 대한 원인자 부담 이전공사비용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정하는바, 이 사건 이전공사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계획에 따른 이설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그 공사비가 감면되어야 하고, ③ 피고의 설비이전 업무처리 매뉴얼은 3.3 부담금 산출방법의 (3)항에서 장래 수요와 질적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분산출하고 그 질적개량비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하므로, 이 사건 이전공사비 중 질적개량비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정산서류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187,000,000원의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률, 규칙 및 고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이전공사의 범위 및 실공사비

가) 이 사건 이전공사의 범위

이 사건 이행협약은 제2조 제1호에서 공사구간을 “재건축 공사 구간 내 관로 12공, 동케이블 14조, 광케이블 38조 총 약 578m 및 동 공사구간 내 피고의 통신설비 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4조 제3항에서 그 공사대금을 1,598,833,921원이라고 정한 점,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위 578m에 대한 공사대금 1,598,833,921원을 선납한 점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갑 제4, 18 내지 20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년부터 원고와 이 사건 통신설비의 이전에 대한 협상을 하다가 2017. 9. 29. 원고에게 D측과 E측의 총 578m에 대하여 관로 등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 1,598,833,921원을 산정하여 통보하였던 사실, ② 위 협상과정에서 원고는 위 578m가 아니라 그 중 약 80m 부분으로 공사구간을 한정하여 낮층공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피고에게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고, 이후 별다른 추가 협상 없이 위와 같은 통보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이행협약 제2조 제3호가 예정한 공사기간 및 피고가 이행협약 체결 전인 2017. 9. 29. 위 공사대금 1,598,833,921원에 대한

상세 공사원가계산서로 원고에게 보낸 자료에 나타난 자재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구간이 약 80m로 한정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이전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공사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K와 L이 최초로 제안한 통신설비 이전공사비는 합계 1,436,915,700원(K 784,847,800원 + L 652,067,900원)인바, 타사가 제안한 설비이전비용을 고려하여도 피고의 공사비용이 부당하게 다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실제 공사대금으로 1,101,769,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공사대금은 감정인 J이 위 578m 구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감정한 1,077,043,507원(설계감리용역비 제외한 나머지 공사 감정가 945,363,735원 + 공사요율로 산정한 설계감리용역비)과 유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통신설비 이전의 범위를 D측과 E측 총 578m 구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확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이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실공사비의 산정

이 사건 이행협약은 제4조 제5항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선납한 공사비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된 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설계감리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이전공사 비용의 감정가는 945,363,735원인 점, 위 감정가는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게 통보한 설계감리용역비 제외한 실공사비 982,060,116원과 유사한 점, 이 사건 이전공사에 투입된 사급자재들이 이 사건 이전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자재가 현장에 투입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감정인이 감정한 실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직접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선 법리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공사의 공사비 중 설계감리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감정가인 945,363,73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이전공사의 공사비를 전기통신사업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의 규정 및 내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전공사의 설계 및 감리는 피고가 직접 수행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사요율에 따라 산정한 설계감리용역비는 131,679,772원인 사실,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공사로 인한 설계감리용역비가 총 119,708,884원(=선로공사 용역비 62,650,297원 + 관로공사 용역비 36,109,973원 + 기간망공사 용역비 20,948,614원)이라 고지한 사실, 전기통신설비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5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사비 산정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공사요율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정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직접 수행한 설계·감리의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공사요율을 기준으로 감정인이 산정한 131,679,772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이 사건 이전공사비는 실공사원가인 945,363,735원에 위와 같이 공사요율에 따라 산정된 설계감리용역비 131,679,772원을 합한 1,077,043,507원(=위 945,363,735원 + 위 131,679,772원)이 된다.

3) 원고의 과잉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 통신설비 이전 공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이전공사는 이 사건 D측 변경부분과 E측 변경부분 총 80m 구간에 매설된 통신설비의 200mm 낮춤공사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낮춤공사를 넘어서는 피고의 공사는 원고와 무관하게 이행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의 협상 결과 이 사건 이행협약에서 이 사건 통신설비의 이전 공사 범위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지에 인접한 E 및 D 578m 전구간으로 확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이전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사전합의한 공사내용에도 불구하고 낮춤공사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와 무관한 범위까지 이전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공사가 “필요한 범위”인지 여부는 단순히 설비를 이전하는 데 최소의 비용이 드는 공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예정지 주변 환경, 매설된 통신설비 및 관로의 형태 및 특성, 공사비용, 이전 전후를 비교하여 점검과 보수의 용이한지 여부, 안전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0,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이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전공사는 이 사건 통신설비의 이전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낮춤공법이 이 사건 이전공사에 관하여 최적의 공법이라거나 그 공법에 의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이전공사로 이전되는 통신설비는 전화국에서 지하로 매설되어 나오는 피더케이블이며 이러한 케이블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일대의 통신이 마비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케이블의 이전 설치시 케이블의 구조적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설비기준 고시 제47조 제2항 제1호는 차도의 경우 관로가 1.0m 이상의 깊이로 매설되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사건 통신설비는 0.6m 이하의 깊이에 매설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신설비의 선로를 낮추는 공사를 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200mm가 아니라 최소 그 2배인 400mm가 낮추어져야 한다. 이 사건 통신설비에는 광케이블에 비하여 하중이 큰 동케이블 14조가 포함되어 있고, 동케이블을 원고 주장대로 일부구간만 매설깊이를 낮추는 경우 양끝 접속점에 매우 큰 하중이 가해지며 그로 인한 케이블의 절단 등 훼손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설비기준 고시 제47조 제5항은 “맨홀 또는 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낮춤공사에 의할 경우 직선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설비기준 고시 제48조 제1항은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도에서 차도로 바뀐 구간을 낮춤공사 방식으로 설비 이전을 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전까지는 보도에서 하던 이 사건 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 작업을 차도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과정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사업 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될 뿐만 아니라,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기존 대비 신속한 보수가 어려워진다.

⑤ 원고는 K, L, M는 낮춤공사만을 하여 통신설비 이전비용을 낮추었다고 주장하나, 위 업체들은 하중이 큰 동케이블의 설비를 가진 피고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광케이블만을 보유한 업체들이므로, 동케이블 14조 및 광케이블 38조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전공사와는 사안이 다르다.

4) 원고의 이전공사비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이전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제3항 제2, 3호 또는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고, 피고의 설비이전 업무처리 매뉴얼 3.3 부담금 산출방법의 (3)항에 따라 이 사건 이전공사비 중 질적개량비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공사로 인하여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었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통신설비의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구체적으로 피고의 어떤 통신설비가 유익하게 되었는지도 특정된 바 없으며 신규 설치된 관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이전된 관로로서 이 사건 이전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통신설비는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것이지 피고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거나 향후 피고의 이설계획이 예정되었던 지역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4조 제3항의 감면사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이전공사는 기존 설비의 이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넘어서 이 사건 이전공사시 통신설비의 질적 개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일부 선로가 추가되었다는 등의 양적 증가에 대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질적 개량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원고의 공사비

감면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원고의 정산서류 미제공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관련 정산서류를 공사완료일 후 30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18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전 이전공사의 실공사비용이 1,077,043,507원인 점,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위 인정된 실공사비와 비슷한 1,101,769,000원에 대한 공사 원가계산서 등의 정산서류를 보낸 점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가계산서 등의 정산서류가 제출된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하도급계약서 등 일부 정산서류가 미제출되었다거나 피고가 공사완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정산서류를 보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전공사비 지급의무가 187,000,000원으로 감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제5항은 피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만일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원고의 선납 공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전공사 중 관로공사, 선로공사에 대하여 각 2018. 6. 11.경 사용검사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납한 공사비 1,598,833,921원과 실제 이 사건 이전공사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 1,077,043,507원의 차액인 521,790,4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사용검사일인 2018. 6. 11.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7. 11.의 다음날인 2018. 7. 12.부터¹⁾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G, I, H과 체결한 이 사건 이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2018. 4. 27. 이후에도 지속된 점이 명백한 이상,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018. 4. 27. 이 사건 이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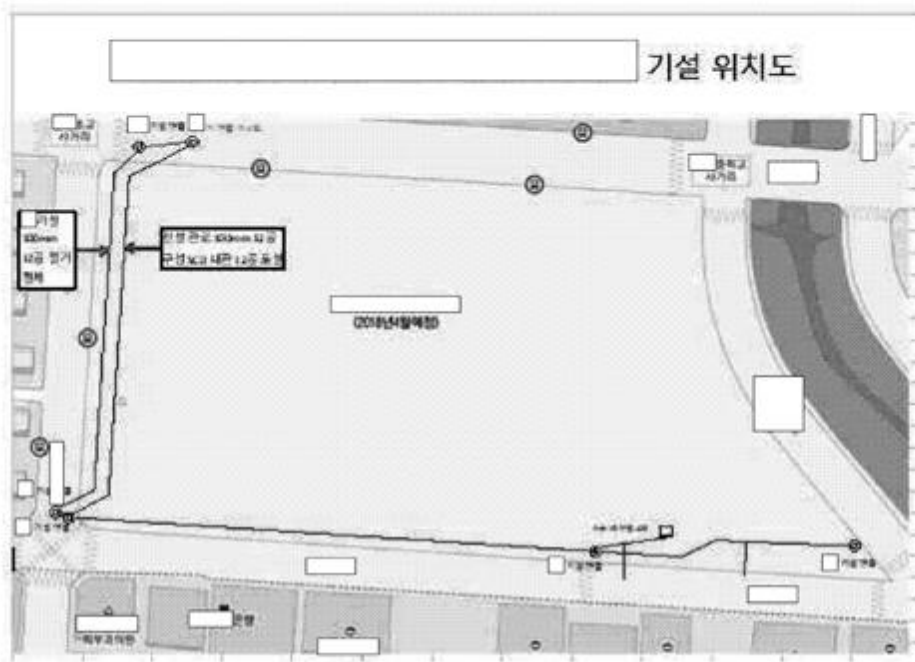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 1523호로 공사비 정산금 497,064,921원과 그 지연이자 53,601,302원의 합인 535,925,893원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차액 상당 반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변제공탁금은 앞에서 인정한 공사대금 521,790,414원과 2018. 7. 12.부터 위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변제공탁은 일부공탁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채무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언, 판사 이승민, 판사 이지영

별지 도면



별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의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공사(이하 “이전공사”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설비 절차 방법 비용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전공사의 기본원칙)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 부담의 이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이전공사와 부당하게 차별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전공사의 공사비용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 산출기준) ① 전기통신설비 이전과 관련한 공사비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3(정보통신공사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전과 관련한 공사비 산출시 사업자 자체공사와 원인제공자 부담공사의 설계와 공사비 산출에 있어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 야간공사 및 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사업체의 현장 방문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 중 '노임 및 단품의 할증'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비 산정) ① 이전공사 비용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에게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용 관련 산출근거 및 업무절차, 공사비 검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이전대상 설비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이설계획이 확정된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 이전공사의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비 및 감리비)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공사비 산정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설계비 산정시 기본설계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4호, 2017. 5.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4. 규정 제17조·제17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32조의2·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홈네트워크설비
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
6.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관로·맨홀 등의 설비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①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도 : 1.0m 이상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 이상
3.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m 이상

- ③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 ④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cm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맨홀 또는 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①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②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 ④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끝.

1)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제5항은 피고가 제출한 정산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원고의 선납 공사비보다 다액인 경우 원고는 ‘정산서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차액을 피고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본문에서 인정한 문언에 의하더라도 정산서류와 마찬가지로 ‘공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류를 준비하는 피고로서는 그 차액 발생 여부를 미리 확정할 수 있어 정산서류 제출기한과 차액반환의무 이행기한을 동일하게 정하여도 전혀 부당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정산서류를 받아보고 이를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추가 지급할 차액 상당액의 존부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원고의 추가 지급기한은 피고의 정산서류 제출기한과 달리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차액 상당액 반환의무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다투지 아니하였다.